

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삭제하고, “결혼축하금을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”으로 하며,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혼인신고일로부터”를 “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”로 하고, 후단 중 “부부”를 “청년부부”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안 제2조 중 “2024년 1월 1일 이후”를 “2023년 8월 1일 이후”로 한다.

현행·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 ② “청년부부”란 모 두 19세 이상 39세 이 하인 사람으로 「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<개정안과 같음>
제4조(<u>결혼장려 분위기</u> <u>조성</u>) ① 구청장은 결 혼장려 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결혼에 대 한 인식개선 및 결혼 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. 1. 미혼남녀 매칭 사 업	제4조(<u>결혼친화도시 조 성</u>) ① ----- <u>결혼친화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만남주선</u> ----- -----	제4조(결혼친화도시 조 성) <개정안과 같음>
2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2. ~ 5. (현행과 같 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5조의2(결혼축하금</u>	제5조의2(결혼축하금

지원 등) ① 구청장은
대구광역시 달서구
(이하 “달서구”라 한
다)내 정착을 위하여
혼인신고일 이후 12
개월이 지나지 아니
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청
년부부에게 결혼축하
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
장법」 제2조에 따
른 수급권자 및 차
상위계층

2. 「한부모가족지원
법」 제5조에 따른
지원대상자

3. 그 밖에 구청장이
일정소득 이하로서
결혼축하금 지원이
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부부

② 결혼축하금은 혼
인신고일로부터 계속
하여 6개월 이상 달
서구에 거주하고 있
는 청년부부의 신청

지원 등) ① 구청장은
대구광역시 달서구
(이하 “달서구”라 한
다)내 정착을 위하여
혼인신고일 이후 12
개월이 지나지 아니
한 청년부부에게 예
산의 범위에서 결혼
축하금을 지원할 수
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결혼축하금은 혼인
신고일 이후 12개월
이내에 계속하여 6개
월 이상 달서구에 거
주하고 있는 청년부

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부부 모두 지급 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의3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2.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
3. 결혼축하금 환수

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청년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.

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 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의3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<개정안과 같음>

<p><u>방법</u></p> <p><u>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4(환수)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p><u>제5조의4(환수) <개정안과 같음></u></p> <p><u>부 칙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<개정안과 같음></u></p> <p><u>제2조(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부터 적용한다.</u></p>
---	---	--